

『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지방2급 인노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정 하천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, 구미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음.

3. 주요내용

□ 용도지역 변경
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
- 용도지역 변경 : 자연녹지지역 ⇒ 제2종일반주거지역
 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내용

구 분	위 치	용 도 지 역	규 모	비 고
기 정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자 연 녹 지 지 역	3,323㎡	지방2급하천 인노천
변 경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3,323㎡	주거지역

□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일원(지방2급하천 인노천)
- 면 적 : 376,412m²(113.8천평)
- 사 업 비 : 26,261백만원
- 사업기간 : '04. 6. 8 ~ '07. 6. 9
- 시 행 자 : 문성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류진석
- 수용인구 : 1,620세대(4,860명)

□ 인노천 현황

구 분	시 종 점	연 장(m)		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시설결정 (인노천)	문성동1046-1번지 ~과평동 544-1번지	3,600	-	3,600	123,328	증)9,451	132,779	
사업구역 (인노천)	문성동1046-1번지 ~문성동 616-1번지	960	-	960	24,000	감)3,367	20,633	사업구역
						증)9,451	33,451	사업구간

※ 하천폐지 : 3,367m²
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: 3,323m²(용도지역 변경 대상)
- 녹지 존치 : 44m²

4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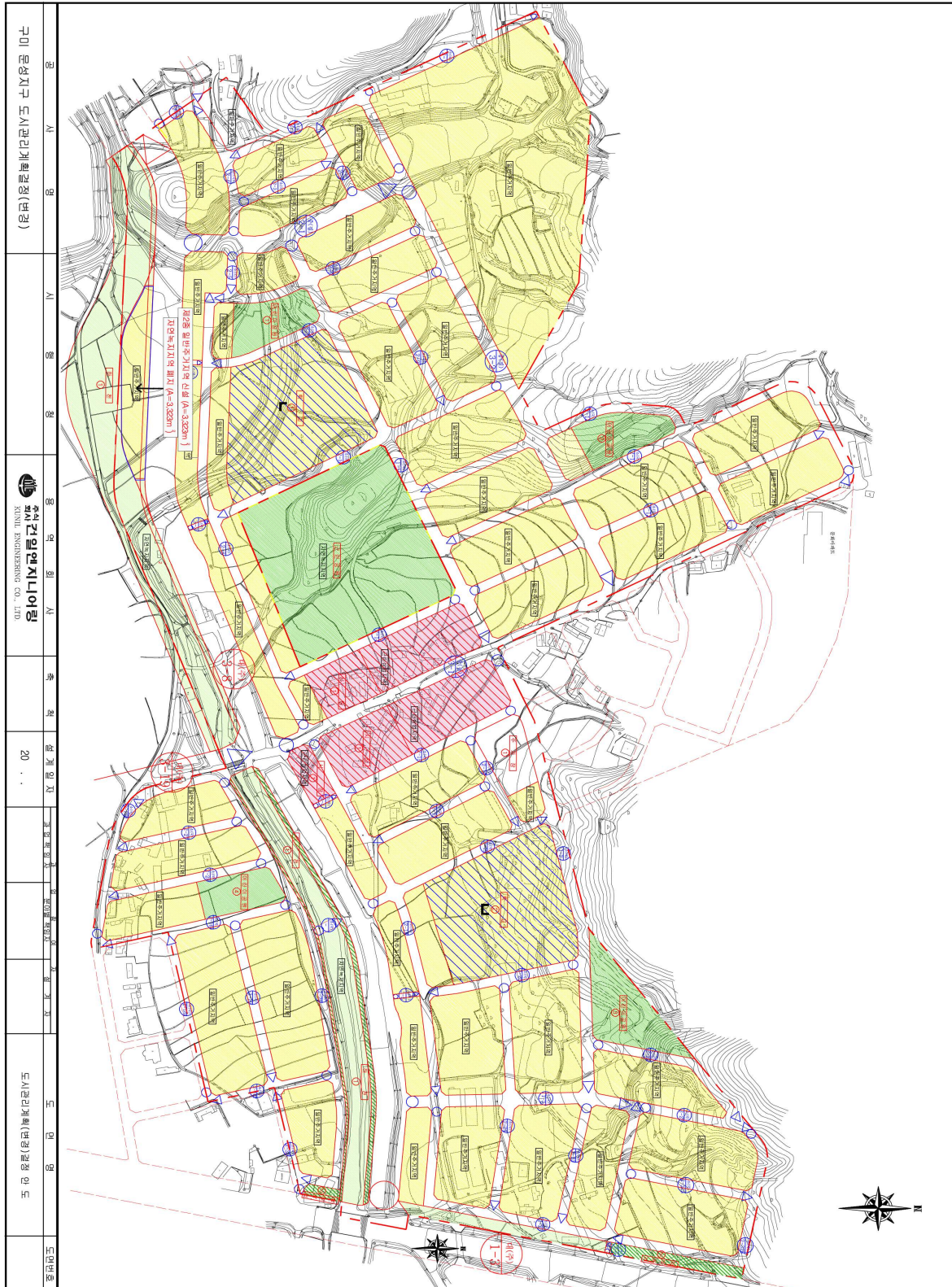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5. 검토의견

-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인노천이 구미 도시계획 결정('78. 2. 14)시에는 원호 -문성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-8호선과 평행하게 계획 되었으나 경상북도의 지방 2급 하천 인노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 직강의 지양 및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천 수계가 변경됨에 따라

- 기존 하천시설부지 중 일부(3,323㎡)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임.

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



변경내역

